

특 정 감 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집중호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5. 7.

#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 연번 | 소 관       | 건 명                            | 행정상 조 치 |    | 재 정 상 조 치 |    |    |    |    |    |
|----|-----------|--------------------------------|---------|----|-----------|----|----|----|----|----|
|    |           |                                | 시정      | 주의 | 회수        | 금액 | 감액 | 금액 | 추징 | 금액 |
| 계  |           | 3건                             | 3       | 0  | 0         | 0  | 0  | 0  | 0  | 0  |
| 1  | @ @ @ @ @ | ※※※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 1       |    |           |    |    |    |    |    |
| 2  | ○ ○ ○ ○ ○ | ◎◎지구<br>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1       |    |           |    |    |    |    |    |
| 3  | ● ● ●     | □□□ 공공산후조리원<br>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 1       |    |           |    |    |    |    |    |

# 2. 처분요구일람표

|    |                                        |   |
|----|----------------------------------------|---|
| 1. | ※※※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 1 |
| 2. |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 4 |
| 3. |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 8 |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 @ @ @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개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표]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 위 치 |         | 사 업 량            | 사 업 비 |     |       | 계 약 일       | 사업기간                        | 도급자          | 비고 |
|----------|-----|---------|------------------|-------|-----|-------|-------------|-----------------------------|--------------|----|
|          | 읍면  | 리동      |                  | 계     | 도급  | 관급    |             |                             |              |    |
| ※※※ 개체공사 | □□  | ∂∂<br>∞ | 교량 개체<br>L=62.0m | 2,327 | 985 | 1,342 | 2024. 1. 9. | 2024. 1.16.~<br>2025. 7. 8. | ℃℃(주)<br>000 |    |

### 1.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sup>1)</sup>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검사 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에서는 “※※※ 개체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 하였다.

## 2. 공사원가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1)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 @@@@에서는 “※※※ 개체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구조물 깨기시 발생하는 철근 고재를 내역서<sup>2)</sup>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은 승인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은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2) 수량산출서에는 철근고재 발생품을 43.19톤으로 계산하였음.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 △△면 ○○리 일원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 공 사 명                       | 위 치                         | 사 업 량                                         | 공사(용역)금액 |        |        | 사업기간                            | 도급자<br>(건설사업자) | 비고  |
|-----------------------------|-----------------------------|-----------------------------------------------|----------|--------|--------|---------------------------------|----------------|-----|
|                             |                             |                                               | 계        | 도급액    | 관급액    |                                 |                |     |
| ○○지구<br>자연재해위험개선지<br>구 정비사업 | □□□ △△면<br>○○리~ㄱㄱ면<br>Σ리 일원 | 지방하천 정비<br>1개소 7.76km<br>소하천 정비<br>2개소 3.59km | 32,843   | 20,612 | 12,231 | 2024.02.16.<br>~<br>2027.02.14. | (주)ㄹㄹ이엔씨와2     | 13% |

###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사항 위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sup>3)</sup>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여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품목(혼합골재)를 구매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직접구매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 ○○○○○에서는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으로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 혼합골재 3,988m<sup>3</sup>에 대해 관급자재로 직접구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00,000천 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자 다수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였으며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

3)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 ○○○○○에서는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호안블럭 설치 시 천단 콘크리트 합판거푸집 양면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맞게 1개면만 설치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감액 00,000천 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설계변경 미이행 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주의)



- ② 관련법령에 따라 혼합골재는 관급자재로 직접구매하시고, 생태 호안블럭  
거푸집 미설치에 따라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읍 ♀♂리 457-1번지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담당하면서 2023. 10월부터 202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시설, 건설사업관리계획 및 설계용역 평가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번 | 사업명                 | 사업내용            | 발주부서<br>(사업기간)       | 건축<br>협 의 | 착공<br>(완료일)         | 설계<br>금액 | 공사<br>금액 | 도급자<br>(감리자)          | 비고 |
|----|---------------------|-----------------|----------------------|-----------|---------------------|----------|----------|-----------------------|----|
| 1  | □□□ 공공산후조리원<br>건립공사 | 제1종근생<br>1,573㎡ | ●●●<br>(23.10.~26.2) | 24.11.12  | 25.1.9<br>(25.3.11) | 338      | 4,834    | ○○○건설주<br>(건축사사무소 ♀♂) |    |

### 1. 추락,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동식비계 설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작업장의 바닥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sup>4)</sup>, 수직보호망<sup>5)</sup>의 설치, 출입금지

4)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썰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설시공 등의 발생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철근 배근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경우 아래 [그림 1]과 같이 비계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비계바퀴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며,

---

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설치

5)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아래 [그림 2]와 같이 건축물 외부비계에서 작업하면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발판 설치, 시스템 비계 장선, 띠장, 안전캡 및 안전난간 설치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일부를 조치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이동식비계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1] 이동식 비계 설치 부적정 현황

그림생략

[그림 2]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안전관련 부적정 현황

그림생략

## 2.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sup>6)</sup>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또한 같은 법 제9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 미 수립 또는 미 준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 및 건설공사 진행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배치기준(안), 의견 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배치기준(안), 의견 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착공 한 사실이 있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의견수렴 결과 등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과 달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표 2]와 같이 설계내역서상에 가설울타리, 사토 및 철근 운반거리 상이 및 현장에서 철근의 가공(절단·절곡)이 필요하지 않은 장철근에 대하여도 철근 가공(절단·절곡)이 필요한 것으로 작성되었는데도 2025. 6. 17. 감사일 현재 설계변경이나 감액을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가설울타리, 운반거리 및 철근 가공 물량 산정 소홀 등으로 공사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 지적사항                           | 당초         |         | 변경        |         | 공사비증감    | 비고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 계  | 5건                             |            |         |           |         | △ 17,019 |    |
| 1  | 가설울타리 정산<br>(3m→2.4m+분진망)      | 267m       | 14,871  | 267m      | 18,736  | △ 593    |    |
| 2  | 가설구조물 구조안전확인비<br>(비계, 가설울타리)   | 1식         | 2,000   | 1식        | 1,300   | △ 700    |    |
| 3  | 사토 운반거리 정산<br>(10km→22km)      | 3,876m³    | 32,907  | 2,460m³   | 20,885  | △ 12,021 |    |
| 4  | 운반거리 정산<br>(철근 30km→15km)      | 1식         | 2,231   | 1식        | 1,095   | △ 1,136  |    |
| 5  | 장철근 가공(절단·절곡)<br>※ 장철근 가공 필요없음 | 114,892ton | 125,836 | 112.09ton | 123,267 | △ 2,569  |    |

#### 4. 설계용역평가 미실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230백만 원 이상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술인의 적정성,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및 과업 이행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일인 2025. 1. 9. 후 6개월 이내인 2025. 6. 9.까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설계 용역평가를 하여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설계용역의 용역금액이 338백만 원으로 230백만 원이 넘어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인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용역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설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5. 설계공모 관련 저작권 귀속 부적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 및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창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공모전을 주최하는 기관은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sup>7)</sup>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고, 입상작에 대해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을 발표한 후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해당 응모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

---

7)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공모전의 주최 기관이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됨



인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해 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항은 설계 공모전에 대해 참여를 유도하려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이므로 권리 양수의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발주 기관이 설계자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은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기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 상 제출 작품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귀속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후 활용 등에 관하여는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상에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에 귀속되고 당선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저작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응모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설계자의 저작권 등을 □□□에 귀속하는 것으로 설계공모지침서에 공고하여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시설 및 행정절차 누락사항은 규정에 맞게 실시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은 주의 처분 하시고, □□□은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